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김승수·이종배·박충권

김기현 · 김성원 · 윤상현

박성민 · 이인선 · 김석기

구자근・강대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지급액은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참전명예수당 지급 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⑧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	⑦
으로 지급하며, 그 <u>지급액 등은</u>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
	<u>정액(참전명예수당 지급 결정</u>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출한 소득평가
	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
	산한 금액을 말한다)과 참전명
	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
	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
	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
	<u>여야 한다</u> .
<u> <신 설></u>	⑧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u>으로 정한다.</u>